



제 43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우수 농촌융복합산업사업자의 인증 유효기간 확대 〉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847호)

2026. 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정 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갱신심사시 우수한 농촌융복합산업사업자의 인증 유효기간 확대 ...	2
IV . 입법의 재정영향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6. 3. 30.
3. 회 부 일 : 2026. 3.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받은 경영체에 대하여 3년마다 인증 유효기간을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증 사업자의 적격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

그런데 소규모 농가나 농업경영체의 경우 3년마다 반복되는 인증 갱신 과정에서 각종 서류 준비와 현장실사 등에 따른 행정적·심리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인증 기준을 성실히 준수하고 사후관리 실적이 우수한 경영체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동일한 갱신 주기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현장의 의견이 있음.

이에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인증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심사 결과가 우수한 모범 경영체에 대하여는 인증 유효기간을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율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사업 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1조).

Ⅲ. 검토의견

1. 갱신심사시 우수한 농촌융복합산업사업자의 인증 유효기간 확대

개정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 갱신심사 결과가 우수하면 인증의 유효기간을 1년 확대(3년 → 4년)하여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인증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인증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 내에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인증 효과를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심사를 받아 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롭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u><신설></u> ③ (생략)	제11조(인증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② (현행과 같음) 관련 규정: 법 제8조제1항 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신청을 받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등 대통령령으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에는 농업인등을 포함하여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갱신하는 경우 그 심사 결과가 우수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인증의 유효기간을 갱신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할 수 있다.</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의 유효기간 및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인증 갱신을 신청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촌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 특산품 제조가공(2차산업) 및 유통 판매, 문화체험, 관광, 서비스(3차산업) 등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임.

농업인등¹⁾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받을 수 있으며, 인증된 사업자는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고, 융자 및 판로확보 등의 정부 지원사업²⁾에 우대를 받을 수 있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제도 개요]

구분	세부내용		
대상	○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 또는 가공품을 제조·판매하거나, 농촌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등	인증 표시	
인증 필요 요건	○주원료는 국산 농산물 사용 ○지역 농산물 50% 이상 사용 ○평균 매출액이 ‘최근 5개년 평균 농가소득 48백만원’ 이상 등		
인증사업자 혜택	○자금 융자지원, 컨설팅 지원, 판로개척 지원, 홍보 지원 등		

*자료: 2026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기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법인
 -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 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소상공인
 - 마.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사회적기업
 - 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중소기업
 - 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인 창조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인 창조기업
- 2) 관련사업 예시
 - (판로개척) 온라인 및 오프라인 기획전(기업·기관 연계), 안테나숍 등 활용 판로개척 지원
 - (컨설팅)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시제품 개발, 판로개척, 민간투자 유치, 사업 분야 다각화 등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자금지원) 운영(3억원/변동), 시설(20억원/고정 2.0% 또는 변동) 자금 저리 융자
 - (민간투자) 창업 초기(7년 미만) 사업자 대상 전문 액셀러레이터 매칭을 통한 보육·투자 유치 촉진, 민간투자 기반 사업화 자금 지원

그런데, 동 사업자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사업자 인증을 갱신하기 위해 서면(최근 2년간 회계자료, 사업실적·계획 등) 및 현장심사, 전문가 검토를 거쳐야 하여 인증갱신 심사에 사업자의 부담³⁾이 발생하고 있음.

참고로 제도 도입 이후부터 현재까지 인증갱신을 포기하는 비율이 평균 16.7%에 달하고 있음.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갱신 현황]

년도	갱 신		
	대상	신청	신청률
'15년 ~ '17년	-	-	-
'18년	532	424	79.7%
'19년	577	460	79.7%
'20년	275	237	86.2%
'21년	625	530	84.8%
'22년	712	619	86.9%
'23년	566	493	86.9%
'24년	997	819	82.1%
'25년	754	617	81.8%
계	5,038	4,199	83.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현황]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인증현황	1,624	1,909	2,034	2,204	2,396	2,525	2,72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3) 서면 및 현장 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증빙, 그 밖에 갱신을 위한 인증심사비 10만원 소요 등

이에 개정안은 농촌융복합사업자의 인증갱신 심사시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인증의 유효기간을 1년 확대(3년 → 4년)하려는 것으로, 우수 사업자의 인증갱신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사업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충실하게 검증함으로써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제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⁴⁾

다만, 개정안은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에 대해서는 인증기간을 연장하여 심사주기가 길어지더라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서 역량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이 가능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현행법 제14조⁵⁾는 인증사업자가 관리부실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

4)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증제도는 그 유효기간이 각기 다르나, 개정안과 같이 3년 또는 4년의 기간은 유사 인증제도에 비하여 과도한 기간이 아닌 것으로 보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품질인증제도 유효기간 현황

제도	유효기간	근거
전통식품 품질인증	4년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수산물전통식품 품질인증	4년	「수산물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GAP)	2년 (필요시 10년 이내 설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수산물 품질인증	2년 (필요시 4년 이내 설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3년	「식품위생법」

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인증의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2조제5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없앤 경우는 제외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4. 사업자의 부도·폐업·파산·관리부실 등의 사유로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 상의 목적을 현저히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의 목적을 현저히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업체 당 연 1회 이상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자의 역량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인증취소 등의 처분을 하고 있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취소 현황]

연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인증 취소	-	2	12	5	6	8	4	4	8	6	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또한, 농촌융복합사업자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교육 및 현장코칭 사업을 실시하여 인증사업자의 경영 및 기술능력을 제고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즉, 개정안은 우수한 농촌융복합산업사업자의 인증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인증심사를 4년에 한번씩 받게 된다는 점에서는 현재보다 사업자의 역량 검증이 약화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나,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후관리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로 검증을 강화할 수도 있으므로,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인증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입법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은 갱신심사 결과가 우수한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우수성 판단 기준의 대강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심사 결과가 우수한" 경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법문상 모호하여, 수범자인 사업자로서는 어떠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유효기간 연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예측하기 어렵고, 만약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연장 여부가 달리 결정될 경우 사업자 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은 수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침익적 처분에 비하여 명확성의 요구 정도가 완화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그 기준이 불명확하면 혜택 배분의 공정성을 둘러싼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비추어 "우수" 여부의 판단 기준에 관한 대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보완을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IV. 입법의 재정영향

한편,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 요구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나, 동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임.⁶⁾

문 의 처
02)6788-5417

6)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는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안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이 순감소 또는 재정수입이 순증가하는 경우와 같이 재정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법안도 포함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